

| 사업 연도 | · ~ · · · · |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(정률법) | | 법인명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
| 자산 구분 | ①종류 또는 업종명 | 총계 | | |
| | ②구조(용도) 또는 자산명 | | | |
| | ③취득일 | | | |
| ④내용연수(기준·신고) | | | | |
|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|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| ⑤기말현재액 | | |
| | | ⑥감가상각누계액 | | |
| | | ⑦미상각잔액(⑤-⑥) | | |
| |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| | | |
| | ⑨자본적지출액 | | | |
| |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| | | |
| | ⑪전기말부인누계 | | | |
| | ⑫가감계(⑦+⑧+⑨-⑩+⑪) | | | |
| ⑬일반상각률·특별상각률 | | | | |
| 상각 범위액 계산 | 당기산출 상각액 | ⑭일반상각액 | | |
| | | ⑮특별상각액 | | |
| | | ⑯계(⑭+⑮) | | |
| | 취득가액 | ⑰전기말현재취득가액 | | |
| | | ⑱당기회사계산증가액 | | |
| | | ⑲당기자본적지출액 | | |
| | | ⑳계(⑰+⑱+⑲) | | |
| ㉑잔존가액(⑳×5/100) | | | | |
| ㉒당기상각시인범위액 {⑯, 단 ⑫-⑯ ≤ ㉑인 경우 ㉑} | | | | |
| ㉓회사계상상각액(⑧+⑨) | | | | |
| ㉔차감액(㉓-㉒) | | | | |
| ㉕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| | | | |
| 조정액 | ㉖상각부인액(㉔+㉕) | | | |
| | ㉗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(⑪, 단 ⑪ ≤ Δ㉔) | | | |
| ㉘당기말부인액누계(⑪+㉖- ㉗) | | | | |
| 당기말의 제상각액 | ㉙당기의제상각액(Δ㉔ - ㉗) | | | |
| | ㉚의제상각누계(⑩+㉙) | | | |
|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(2013. 12. 31. 이전 취득분) | ㉛기준상각률 | | | |
| | ㉜증전상각비 | | | |
| | ㉝증전감가상각비 한도 [㉜-{ ㉓-(㉘-⑪)}] | | | |
| | ㉞추가손금산입대상액 | | | |
| | ㉟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| | | |
|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(2014. 1. 1. 이후 취득분) | 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| | | |
| | ㊲기준감가상각비 한도 | | | |
| | ㊳추가손금산입액 | | | |
| ㊴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(㉘-㉝-㊳) | | | | |

작성 방법

1. 자산구분란

가. 종류별, 업종별,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

나. 취득일(③)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.

2. 상각범위액 계산란

가. 일반상각액(⑭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 일반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나. 특별상각액(⑮)란은 일반상각액(⑭)에 특별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당기상각시인범위액(⑳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잔존가액(㉑)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(⑯)을 적습니다. 다만,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당기산출상각액(⑯)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(㉑)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를 적습니다.

3. 회사계산상각액(㉓)란은 회사계산상각비(⑧)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(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4. 차감액(㉔)란은 회사계산상각액(㉓)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(㉒)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,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△표시를 적습니다.

5.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㉕)란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⑩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.

6.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(㉖)란에는 차감액(㉔)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㉕)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. 다만, 차감액(㉔)란에 시인부족액(△표시분)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(㉑)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.

7. 전기말 부인누계(㉘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(㉑)에 당기상각부인액(㉖)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가감하여 적고, "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[별지 제50호(갑)서식]"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.

8. 당기의제상각액(㉙)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(㉔)란의 시인부족액(△표시분)을 적습니다. 단,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※ ㉑~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.

9. 기준상각률(㉚)란에는 "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[별지 제20호서식(3)]"의 기준상각률을 적고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.

10. 종전상각비(㉛)

가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: ㉘×㉚

나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: ㉘×㉚

다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

11.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㉜)란은 종전상각비(㉛)에서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{㉛-(㉘-㉑)}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12. ㉜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㉜)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

13. ㉜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"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[별지20호서식(3)]"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㉘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㉜)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.

14. ㉜추가 손금산입 후 전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
| 사업 연도 | · ~ · · · · |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(정액법) | | 법인명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|
| 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자산 구분 | ① 종류 또는 업종명 | | 총계 | | |
| | ② 구조(용도) 또는 자산명 | | | | |
| | ③ 취득일 | | | | |
| ④ 내용연수(기준·신고) | | | | | |
|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|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| ⑤ 기말현재액 | | | |
| | | ⑥ 감가상각누계액 | | | |
| | | ⑦ 미상각잔액(⑤-⑥) | | | |
| | 회사계산 상각비 | ⑧ 전기말누계 | | | |
| | | ⑨ 당기상각비 | | | |
| | | ⑩ 당기말누계(⑧+⑨) | | | |
| | 자본적 지출액 | ⑪ 전기말부인누계 | | | |
| | | ⑫ 당기지출액 | | | |
| | | ⑬ 합계(⑪+⑫) | | | |
| ⑭ 취득가액(⑦+⑩+⑬) | | | | | |
| ⑮ 일반상각률·특별상각률 | | | | | |
| 상각 범위액 계산 | 당기산출 상각액 | ⑯ 일반상각액 | | | |
| | | ⑰ 특별상각액 | | | |
| | | ⑱ 계(⑯+⑰) | | | |
| | ⑲ 당기상각시인범위액 {⑱, 단 ⑱ ≤ ⑭ - ⑧ - ⑪ + ⑮ - 전기 ⑳} | | | | |
| ⑳ 회사계상상각액(⑨+⑫) | | | | | |
| ㉑ 차감액(⑲-⑳) | | | | | |
| ㉒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| | | | | |
| 조정액 | ㉓ 상각부인액(㉑+㉒) | | | | |
| | ㉔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(㉕, 단 ㉕ ≤ Δ㉑) | | | | |
| 부인액누계 | ㉕ 전기말부인액누계(전기 ㉖) | | | | |
| | ㉖ 당기말부인액누계(㉕+㉓- ㉔) | | | | |
| 당기말의 제상각액 | ㉗ 당기의제상각액(Δ㉑ - ㉔) | | | | |
| | ㉘ 의제상각의누계(전기 ㉙+㉗) | | | | |
| 신고 조정 감가상각 비계산 (2013. 12. 31. 이전 취 득분) | ㉙ 기준상각률 | | | | |
| | ㉚ 종전상각비 | | | | |
| | ㉛ 종전감가상각비 한도[㉚-{㉑-(㉖-㉕)}] | | | | |
| | ㉜ 추가손금산입대상액 | | | | |
| ㉝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| | | | | |
| 신고 조정 감가상각 비계산 (2014. 1. 1. 이후 취 득분) | ㉞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| | | | |
| | ㉟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| | | | |
| | ㊱ 추가손금산입액 | | | | |
| ㊲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(㉖-㉛-㊱) | | | | | |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20호서식(1)]"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2. 광업권 또는 광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

미상각잔액 X 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}}{\text{해당 광구의 잔존채굴예정량}}$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.

3. ㉓, ㉔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·손금산입합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사업 연도 | . . . ~ . . . |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| 법인명 |
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

1. 동종자산 내역

| ①업종 | ②자산종류 | ③자산개수 | 정률법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| | | 정액법 |

2. 기준상각률의 계산

| 구분 | 기준연도() | | 전년도() | | 전전년도() | | 평균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정률법 | 정액법 | 정률법 | 정액법 | 정률법 | 정액법 | 정률법 | 정액법 |
| ④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 | | | | | | | | |
| ⑤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 | | | | | | | | |
| ⑥ 기준상각률 (④ ÷ ⑤) | | | | | | | | |

3.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

| | |
|---|--|
| ⑦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 | |
| ⑧ 종전상각비 합계 (⑦ × ⑥ (평균값)) | |
| ⑨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| |
| ⑩ 신고조정 한도 합계 (⑧ - ⑨) | |
| ⑪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 | |
| ⑫ 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(Min(⑩, ⑪)) | |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.
2. 1. 동종자산 내역 (①, ②, ③)란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,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.
3. 2. 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·전년도·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.(예: 2010)
4.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(④)란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.
5.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⑤)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) 또는 미상각잔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)의 합계를 적습니다.
6.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⑦)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) 또는 미상각잔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)의 합계를 적습니다.
7. 종전상각비 합계(⑥)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⑦)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)을 적습니다.
8. ⑨란에는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20호서식(1)·(2)]"에서 (1)의 경우 {㉓-(㉔-⑩)}, (2)의 경우 {㉔-(㉕-㉖)}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.
9.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(⑪)란에는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 20호서식(1)·(2)]"에서 (1)의 경우 ㉗, (2)의 경우 ㉘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.
10. ㉚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신고조정 한도 합계(⑩)와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(⑪)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사업 연도 | ~ |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| 법인명 |
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

| ①자산구분 | 코드 | ② 합계액 | 유형자산 | | | ⑥ 무형자산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③ 건축물 | ④ 기계장치 | ⑤ 기타자산 | |
| 재무 상태표 상가액 | ⑩기말현재액 | 01 | | | | |
| | ⑩감가상각누계액 | 02 | | | | |
| | ⑩미상각잔액 | 03 | | | | |
| ⑩상각범위액 | | 04 | | | | |
| ⑩회사손비계상액 | | 05 | | | | |
| 조정 금액 | ⑩상각부인액 (⑩⑤-⑩④) | 06 | | | | |
| | ⑩시인부족액 (⑩④-⑩⑤) | 07 | | | | |
| | ⑩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 | 08 | | | | |
| ⑩신고조정손비계상액 | | 09 | | | | |

작성 방법

- ⑩회사손비계상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⑩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: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[별지 제20호서식(1)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⑩⑦금액, 별지 제20호서식(2)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⑩④금액의 합]을 적습니다.
- ⑩신고조정손비계상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 {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 제20호서식(1)·(2)]"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[(1)의 ⑩⑤,⑩⑥, (2)의 ⑩③,⑩④]} 을 적습니다.